

제 호

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서

1. 기관·단체 또는 법인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
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인